

[특집]

유효한 세례성사



안 병 영

[부산교구·신부]

I. 서론

II. 본론

1. “우리는 당신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2. 신앙교리성의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대한 답변
 - 2.1.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관해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2008.02.01)
 - 2.2.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답변(2008.02.06)
3. 교회법의 법원인 교의(*dogma*)는 신학자의 사적 견해가 아니다

III. 결론

I. 서론

교회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져(「교회 헌장」 8항)”이기 때문에, 민족, 문화, 인종, 계급 및 성별과 같은 온갖 차이를 궁극적으로 ‘지양’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를 구별하고 갈라 세우는 지정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그리고 그밖에 모든 자연적인 요소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 곧 한 분이신 성령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중재자를 세우시고,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세례를 통해 구원을 섭리하시고 하나의 성체성사를 마련하시고 항상 현존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느님 면전에서 결코 아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¹⁾ 이러한 ‘하나 됨’은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도 모자라는 보편성 및 가톨릭적인 특성의

1) Cf. H. de Lubac, *Quellen Kirchlicher Einheit*, Einsiedeln(Johannes-Verlag), 1974, pp.31-33.

근본토대이다.²⁾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교회 헌장」 8항)에 당 신께서 세우신 ‘신약의 성사들’을 맡기셨다. 이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이로써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며 또 하느님께 경배가 드러지고 사람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교회의 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표지이고 수단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역자이든지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든지 성사 거행 중에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교회법 제840조).”

교회는 오래 전부터 ‘신약의 성사들’의 구성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나의 믿을 교의(dogma)³⁾로 지켜 왔다. “이 모든 성사들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료를 구성하는 사물들, 형상인 말씀들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것을 하려는 지향으로 성사를 수여하는 교역자이다. 만약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성사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⁴⁾

2) 참조: 발터 카스퍼, 『신학과 교회』,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2, 485쪽.

3)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 제3차 회기(1870년 04월 24일) ‘*Constitutio dogmatica de fide catholica*(가톨릭 신앙과 교의에 관한 헌장)’의 제3장 신앙(Caput III. *De fide*)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교의(dogma)라는 단어에 부여하는 뜻을 정의한다. “전통에 의해 기록되거나 혹은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에 포함된 모든 내용, 그리고 교회가 장엄한 결정이나 혹은 정구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을 통하여 신적 계시로서 그러므로 믿어야 한다고 제시한 모든 것을 신성하고 보편적인(*divina et catholica*)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Porro fide divina et catholica ea omnia credenda sunt, quae in verbo Dei scripto vel tradito continentur, et ab Ecclesia sive solemniter iudicio sive ordinario et universali magisterio tamquam divinitus revelata credenda proponuntur*).” 즉, 하나의 진리가 교의(dogma)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서나 성전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교회의 교도권이 가르치는 것이라야 하되, 이를 계시된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교의(dogma)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https://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vatican-council/documents/vat-i_const_18700424_dei-filius_it.html(2023.1.30. 검색):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321&keyword=%EA%B5%90%EC%9D%98&gubun=01(2023.1.30. 검색): DH 3011: 주세페 알베리고 외 엮음,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 트렌토 공의회·제1차 바티칸 공의회』, 김영국, 손희송, 이경상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6, 807쪽 참조.

4) Eugenius IV (in Conc. Florentin), cons. ‘*Exultate Deo*’, §9, 22 nov. 1439: Heinrich

교회는 교의(*dogma*)에 의해 성사의 구성 요소인 ‘질료, 형상, 교역자’ 중 하나라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지켜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특히 아래의 문서들을 발표할 만큼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대한 개별교회의 물음에 답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효한 세례성사가 없이 이어지는 성사들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양식문에 따라 수여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하여 제기된 물음에 대한 답서」, 2020.6.24., in *Bollettino Sala Stampa*(B0406); 교황청 신앙교리성,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새로운 답변」, 2008.2.6., 177/85-26842; 교황청 신앙교리성, 「세례의 유효성에 관해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 2008.2.1., in *AAS* 100(2008), p.200; 교황청 신앙교리성,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의문에 대한 답변」, 2001.6.5., in *AAS* 93(2001), p.476; 교황청 신앙교리성, 「‘새 교회’ 종교 단체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공지」, 1992.11.20., in *AAS* 85(1993), p.179; 교황청 신앙교리성, 「루돌프 슈타이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공지」, 1991.3.9., in *AAS* 83(1991), p.422.⁵⁾

본 연구의 시작이 되는 미국 디트로이트대교구에서의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제기는 유효한 세례성사의 구성 요소, 즉 ‘질료, 형상, 교역자’에 대해 교회가 다시금 강조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게 한다.

Denzinger(ed, bilingue, a cura di Peter Hünermann), *Enchiridion Symbolorum-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EDB, Bologna, 1995, pp.584-585: 하인리히 텐칭거,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이하 DH)』, 헬무트 호핑 공편, 페터 휘너만 편집, 2014(제44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제1판), 388쪽.

5) 신앙교리성,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새로운 답변」, 2008.02.06.

[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

II. 본론

1. “우리는 당신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2020년 8월 20일, 미국 『Catholic News Agency』의 편집자였던 제이 디 플린(J.D. Flynn)은 다음의 제목으로 기사를 업로드하였다. “디트로이트 사람은 그가 사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도 아니었습니다(Detroit man thought he was a priest. He wasn't even a baptized Catholic).”⁶⁾

기사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디트로이트대교구에서 서품을 받은 매튜 휴드(Matthew Hood) 신부는 2020년 여름, 교황청 신앙교리성 관보를 보게 되었다. 그 관보는 그해 8월 6일 교황청 관보에 실린 6월 24일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답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양식문에 따라 수여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하여 제기된 물음에 대한 답서」⁷⁾였다. 신앙교리성의 답서에는 다음의 물음과 답변이 전해졌다.

- 물음

1.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양식문에 따라 수여한 세례는 유효한가?
2. 이 양식문에 따라 거행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절대적 형상으로 (forma absoluta)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 답변

1. 유효하지 않다.
2. 그래야 한다.

6) <https://www.catholicnewsagency.com/news/45574/detroit-man-thought-he-was-a-priest-he-wasnt-even-a-baptized-catholic>(2023.2.1. 검색).

7)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0/08/06/0406/00923.html>; <https://cbck.or.kr/Documents/Curia/20210303?gb=title&search=답서>(2023.2.1. 검색); 교황청 신앙교리성,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양식문에 따라 수여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하여 제기된 물음에 대한 답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3(202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13-120쪽.

후드 신부는 신앙교리성의 답서를 본 뒤, 자신이 유아세례를 받았을 때의 영상을 떠올렸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영상 안에서 세례를 집전하던 마크 스프링어(Mark Springer)부제는 유아였던 후드 신부에게 “우리는 당신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며 집전하고 있었다. 후드 신부는 신앙교리성의 답서에 따라 자신의 세례가 유효하지 않음을 그리하여 세례 이후에 받은 성사에 대한 유효성의 의문을 지니고 대교구장 앨런 헨리 비그너론(Allen Henry Vigneron) 대주교에게 문의하였다. 대주교는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교구민에게 전하는 서한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였다. 서한에서는 신앙교리성의 답서를 신자들에게 알리며 후드 신부의 상황을 설명한 뒤, 다음의 말을 전하였다. “후드 신부는 그 즉시 대교구에 연락을 했고, 그의 상황을 회복시킬 적절한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그는 최근에 유효하게 세례를 받았습시다. 게다가, 다른 성사들이 유효한 세례성사 없이는 유효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후드 신부는 최근에 유효하게 견진을 받았고, 부제와 사제로 서품 되었습니다. 후드 신부의 직무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⁸⁾

후드 신부는 짧은 시간에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았고, 성체를 모셨다. 그리고 그는 피정에 임했고, 부제서품을 받았으며, 2020년 8월 17일에 마침내 ‘진짜로(for real)’ 사제서품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후드 신부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스프링어 부제와 후드 신부가 사목하며 성사를 집전했던 모든 상황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서한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후드 신부에게 처음 세례를 준 스프링어 부제는 1986년부터 1999년까지 트로이(Troy) 지역에 있는 세인트 아나스타샤(Saint Anastasia) 본당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유효하지 않은 예식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본당과 디트로이트대교구는 스프링어 부제가 거행한 세례를 받은 이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들이 유효한 성사를 받을

8) [https://www.aod.org/august-23-2020-letter-to-the-faithful-english?fbclid=IwAR0LBCJSfAN-DNR7n37UZyvQh_vmfQHgm9BuMNI64IgQr5viFbXgG4q28\(2023.2.1. 검색\)](https://www.aod.org/august-23-2020-letter-to-the-faithful-english?fbclid=IwAR0LBCJSfAN-DNR7n37UZyvQh_vmfQHgm9BuMNI64IgQr5viFbXgG4q28(2023.2.1. 검색)).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소식은 유효한 성사를 거행하는 데 크게 제한된 시간인 3년 동안 후드 신부와 교류했던 많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 후드 신부가 발령받았던 본당들은 대교구와 협력하여 후드 신부에게 성사를 받은 이들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개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⁹⁾

대교구장은 이어서 말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하느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성사와 결부시켰지만, 성사에 구속되어 있지는 않으셨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성사가 집전자에 의해 적절하게 거행될 때, 항상 성사를 통해 활동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느님은 주도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은총을 베풀 수 있고, 행하신다는 점에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시에 성사는 합당하게 거행될 때, 가시적인 예식이자 하느님의 성화의 은총이 적절한 준비를 갖춘 이들을 향해 흘러가는 효과적인 통로가 됩니다. 성화의 은총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이고, 유효한 성사적 세례는 이 은총이 영혼에 주어졌음을 보증합니다. [...] 개별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가능한 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성사를 유효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완전한 유익과 확신을 갖도록 해야만 합니다.”¹⁰⁾

교회는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의 거행 중에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이기 위해선’¹¹⁾ 주어진 예식서를 마음대로 바꾸지 않기를 교회법 제846조 제1항에서 규정한다.

9) https://www.aod.org/august-23-2020-letter-to-the-faithful-english?fbclid=IwAR0LBCJSfAN-DNR7n37UZyvQh_vmfQHgm9BuMNlMT64IgOr5viFbXgG4q28(2023.2.1. 검색).

10) https://www.aod.org/august-23-2020-letter-to-the-faithful-english?fbclid=IwAR0LBCJSfAN-DNR7n37UZyvQh_vmfQHgm9BuMNlMT64IgOr5viFbXgG4q28(2023.2.1. 검색).

11) 참조: 교회법 제840조.

제846조 제1항: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전례서가 성사 거행 때에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도 전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

스프링어 부제로 인한 세례성사의 무효 행위는 디트로이트대교구에서만이 아닌 보편교회에 제기되는 의문들로 유추하면 여러 곳에서 있어왔으며, 이에 대해 교황청과 신앙교리성에서는 여러 문헌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공포하였다. 그 중 2008년 2월, 신앙교리성에서는 「세례의 유효성에 관해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2008.02.01)¹²⁾과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새로운 답변」(2008.02.06)¹³⁾을 제시한바 있다.

2. 신앙교리성의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대한 답변

2.1.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관해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 (2008.02.01)¹⁴⁾

- 물음

(1) “나는 창조주와 구세주와 성화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Creator, and of the Redeemer, and of the Sanctifier)와 “나는 창조주와 해방자와 보호자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Creator, and of the Liberator, and of the Sustainer)라는 양식으로 주어진 세례가 유효한가?

- 답변

(2) 이러한 양식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완전한 정식으로 다시 세례 받아야 하는가?

12) 교황청 신앙교리성, 「세례의 유효성에 관해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8(200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07~108쪽.

13) 안토니오 미랄렐스 몬시뇰,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새로운 답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8(200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09~116쪽.

14) <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6?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

제1 의문에 대하여: 아니다.

제2 의문에 대하여: 그렇다.

2.2.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답변 (2008.02.06)

이 문서는 당시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윌리엄 조셉 레바다 추기경(Card. William Joseph Levada)이 「세례의 유효성에 관하여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보내 온 안토니오 미랄레스 몬시뇰(Msgr. Antonio Miralles)의 해설이다.¹⁵⁾

몬시뇰에 의하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는”(티토 3,5) 세례는 주 예수님께서 당신 교회를 부요하게 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이 세례를 통하여 사람은 분명히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되며 “교회적 사회”¹⁶⁾에 법적인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대로 올바르게 세례를 거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몇 세기 동안 교황청과 신앙교리성에서 발표된 문서들은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몬시뇰은 그 우려가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영어

15) [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I\(2023.2.1. 검색\)](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I(2023.2.1. 검색)).

16) “법전의 목적은 애덕, 은총, 특은의 우위성을 지적하는 한편 또한 교회의 사회 생활에서나, 거기에 속한 각 개인의 생활에서나 동시에 그 조직적 발전이 더 쉬워지도록 교회적 사회에 그러한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 교회는 사회적이고 가시적 조직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규범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의 구조가 가시적이기 위함이고,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 특히 거룩한 권한과 성사가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 관계와 각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고 제정되어 사랑에 입각한 정의에 따라서 조화될 수 있기 위함이고, 끝으로 더 거룩하게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살기 위해 취해진 공동체적 노력이 이 교회 법규에 의하여 유지되고 강화되며 증진되기 위함이다”: Ioannes Paulus PP. II, *Constitutio Apostolica* 「*Sacrae disciplinae leges*」, 1983.01.25, in *Acta Apostolicae Sedis*(이하 AAS) 75/II(1983), pp.XI-XIII(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9, 19. 23쪽): 「교회 헌장」 8항.

권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분명 언어적 문제가 아닌 세례 양식 자체에 관한 것임을 지적한다. 세례는 사람들의 구원(교회법 제849조)¹⁷⁾에 관한 문제이기때 그 문제의 중요성이 폄하될 수 없다.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태 28,19)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제정하신 것을 변경할 권리가 없다(교회법 제846조, 제850조¹⁸⁾). 그래서 각 위격의 이름을 따라 부르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께 청원하는 내용이 없는 모든 세례는 무효이다. 지난 세월 동안 교도권은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라고 되풀이하여 가르쳤다. 문시놀은 세례성사와 관련하여 교회의 대표적인 문헌으로 「다마스주의 교의 서한」(*Tomus Damasi*, 382)¹⁹⁾과 성 그레고리오 2세 교황의 교령 「나의 소망」(*Desiderabilem Mihi*, 726)²⁰⁾과 성 즈카르야 교황의 「거룩한 입문」(*Sacris Liminibus*, 748),²¹⁾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의 문헌 「보편 신앙」(*De Fide Catholica*, 1215),²²⁾ 비엔 공의회 의 헌장 「보편 신앙」

17) 교회법 제849조: 성사들의 문이고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것이 필요한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된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

18) 교회법 제850조: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대로 집전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 요건들만 지켜도 된다.

19) DH 176: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고 같은 신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들”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명칭을 믿고 선포한다. 이단자들 또는 유대인 또는 이교도들이 광분하여, 대천사와 천사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이와 같이 세례 받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만 세례를 받기 때문이다.

20) DH 580: 주교님께서는 교회의 옛 관습을 지켜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세례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 은총의 선물을 세례 집전자의 이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21) DH 589: 만일 어떤 사람이 세례 때에 성삼위 가운데 한 위격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는 세례일 수 없다.

22) DH 802: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느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면서 물로써 성화되는) 세례성사는 누구에 의해서도 교회의 형식으로 올바르게 베풀어졌을

(*Fidei Catholicae*, 1312),²³⁾ 피렌체 공의회 의 칙서 「하느님 찬미」(*Exsultate Deo*, 1439),²⁴⁾ 트리엔트 공의회 의 교령 「성사」(*De Sacramentis*, 1547)²⁵⁾ 등을 제시한다.

교회는 공식적인 교의(*dogma*)로 세례성사 예식에 관한 전례 문헌들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대신하는 용어를 제안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효한 양식들 가운데 하나로 세례를 집전하는 사람은 이 행위의 대상자들과 유아의 경우에는, 참세례를 희망하며 유아를 세례로 인도한 이들을 속이는 것이다.”²⁶⁾ 이러한 행위(교회법 제124조 제1항²⁷⁾)는 심각한 불의로서, 지체 없이 교정되어야 하고 더불어 세례에 대한 원의의 유효성에 근거하여 무기한으로 연기하여서는 안 된다. 몬시뇰은 “교회 일치 차원에서 참다운 세례를 보장하는 일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²⁸⁾함을 지적하며, “신앙인은 공통으로 받은 세례 덕분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라”²⁹⁾ 부르기 때문에 진정한 세례를 포기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라시는 완전한 친교의 목표에서 매우 멀어짐으로써 교회 일치의 길에서 큰 퇴보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참조: 교회

경우에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23) DH 903: 세례 받은 [...] 모든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베풀어지는 이 세례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어른을 위해서나 유아를 위해서나 다 같이 구원을 위한 완전한 도구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24) DH 1314: 형상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말이다.

25) DH 1617: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단자에 의해 베풀어진 세례가 참된 세례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 것이다.

26) [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

27) 교회법 제124조 제1항: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하고 또한 그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뿐 아니라 행위의 유효성을 위하여 법으로 부과된 요식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8) [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

29) [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

법 제205조³⁰⁾, 제209조 제1항³¹⁾). 마지막으로 몬시뇰은 답변을 마무리하며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별히 교회의 목자들이 신앙 공동체의 교의(*dogma*)에 함께 하길 권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에페소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충실하게 일치하여 남아 있는 라는 명을 받고 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에페 4,5-6). 교회의 목자들은 이 신앙교리성 문서를 통해 힘을 얻어 또 다른 무효한 세례성사 양식이 있는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³²⁾

3. 교회법의 법원인 교의(*dogma*)는 신학자의 사적 견해가 아니다

“개별교회는 보편교회와 일치한다.”는 원칙은 먼 옛날에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신앙 교리와 성사적 표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중단 없는 사도 전통이 전해 준 보편 관습에 대해서도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앙을 참으로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존중하여야 한다. 교회의 기도 법칙(*lex orandi*)은 교회의 믿음 법칙(*lex credendi*)에 일치하기 때문이다(「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표준 제3판, 2002, 397항).³³⁾

30) 교회법 제205조: 이 지상에서 가톨릭 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는 이들은 그 교회의 보이는 조직 안에서 신앙 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 통치의 유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영세자들이다.

31) 교회법 제209조 제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2) [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

33) [http://www.vatican.va/holy_father/benedict_xvi/letters/2007/documents/hf_ben-xvi_let_20070707_lettera-vescovi_it.html\(2023.3.15. 검색\)](http://www.vatican.va/holy_father/benedict_xvi/letters/2007/documents/hf_ben-xvi_let_20070707_lettera-vescovi_it.html(2023.3.15. 검색)): Benedetto XVI, lettera apostolica in forma di motu proprio 「*Summorum pontificum*」 sull'uso straordinario dell'antica forma del rito romano, 7 luglio 2007, in *AAS* 99(2007), p.777: in *Enchiridion Vaticanum*(이하 EV) 24(2007), Edizioni Dehoniane Bologna, 2009, n.110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7(200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99쪽.

교회의 많은 규범은 교회의 믿음 법칙(*lex credendi*)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법은 교의(*dogma*)를 생략할 수 없으며, 교의(*dogma*) 없이는 규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³⁴⁾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이 교회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의 교의(*dogma*)를 사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게 한다.

성 비오 10세 교황은 특별히 교의(*dogma*)와 그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사적인 견해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나중에 공통의 양식에 상응하는 것으로 공적 교도권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하나의 본체 또는 하나의 교리(*doctrina*) 체계로 통합되는 것을 교의(*dogma*)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것(*dogma*)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quae postea in unum corpus coagmentatae vel in unum doctrinae aedificium, cum a magisterio publico sancitae fuerint utpote communi conscientiae respondentes, dicuntur dogma. Ab hoc secernendae sunt probe theologorum commentationes.”*³⁵⁾

요셉 라칭거 추기경 또한 신앙교리성의 훈령인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 — 진리의 선물(*Donum veritatis*)」³⁶⁾에 대한 보도기관에 발언한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신학은 한 신학자의 사사로운 견해가 결코 아니다. 신학자의 사건 그 자체는 잠시 동안 참작될 수 있겠지만 급속히 무의미의 영역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 대신 교회는 역사의 변천 속에서도 견고하게 계속 버티어 오고 있는 살아 있는 주체로서 신학자의 산 영역이다. 신학이 체험해 온 하느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보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34) 벨라시오 데 파울리스·안드레아 다우리아, 『일반 규범』, 김효석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380쪽.

35) Pio X, Litt. Ency. 「*Pascendi Dominici Gregis*」, 1907.09.08., in ASS 40(1907), p.611: DH 3488.

36) Congregatio de Doctrina Fidei, 「*Donum veritatis*」, 1990.05.24., in AAS 82(1990), pp.1550~157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 — 「진리의 선물」(*Donum veritatis*),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회보』 62호(1990/11), 42~53쪽.

학은 그 자신의 살아 있는 영역 즉 교회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그리고 교회로부터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교회를 인정할 때에 한하여 역사적으로 계속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교회는 개인의 한계들을 초월하는 공동체적 주체로서 신학자가 능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것이다.”³⁷⁾

교회는 신학과 공동체의 교의(dogma) 또한 구분해야 하며, 그러므로 ‘신학자의 사사로운 견해’가 결코 공동체의 교의(dogma)가 될 수 없음을 오래 전부터 결정해왔다. 이 공동체의 교의(dogma)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교회법 조항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된다”(교회법 제12조 제1항).³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에서도 “교회 법률은 그 본성상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전을 준비하는 오랜 기간 동안 규범의 표현이 정확하게 되며 그 규범들이 법적, 교회법적, 신학적인 견고한 기초에 입각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³⁹⁾고 공포하였다. 더불어 교황령은 “새 교회법전은 공의회에 앞선 작업이 필요”⁴⁰⁾ 했음을 밝히며, 교회법의 법원이 공동체의 교의(dogma)임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전례 현장」 반포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도적 서한「25주년」(*Vicesimus Quintus Annus*, 1988년 12월 04일)에서도 위의 정신을 이어서 말씀하셨다.

“전례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고 교회가 일치의 성사를 거행하는 행위입니다(「전례 현장」 26항).” 그러므로 그 행위의 규범은 오로지 교회의 교계가 가지는 권한만이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전례 현장」

37) Card. Ratzinger speaks to Press on New Instruction. “Theology is not private idea of theologian”, in *L'Osservatore Romano*, N. 27, 1990.7.2, p.5(최영철 신부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라칭거 추기경이 새 훈령에 대해 보도 기관에 발언한 내용—신학은 신학자의 사적 견해가 아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회보』 62호(1990/11), 53~56쪽.

38) 교회법 제11조: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한다.

39) 요한 바오로 2세, 앞의 책, 23쪽.

40) 요한 바오로 2세, 앞의 책, 15쪽.

22항, 26항). 전례는 교회의 전체적인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전례 헌장」 26항).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가 결정한 것에서 무엇이든간에 뒤틀 붙이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제라 하더라도 안 되며 어떤 단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절과 전례 본문에 대한 충실성은 ‘기도 법칙’(lex orandi)의 요구이며 ‘기도 법칙’은 언제나 ‘믿음 법칙’(lex credendi)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충실치 못하면 성사 자체의 유효성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전례 헌장」 22항).⁴¹⁾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참조: 『전례 헌장』 26항: 교회법 제837조 제1항⁴²⁾). 그러므로 세례 받은 교회 구성원은 유효한 성사를 위해서 하나의 교의(dogma)와 이것에 뿌리를 두는 교회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41) [42\) 교회법 제837조 제1항: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 즉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 자체의 예식 거행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속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 및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https://www.cbck.or.kr/Documents/Pope/400053?gb=title&search=25%EC%A3%BC%EB%85%84(2023.3.22. 검색): Ioannes Paulus PP. II, Litterae apostolicae 「Vicesimus quintus annus」 quinto iam lustro expleto conciliari ab promulgata de sacra liturgia constitutione Sacrosanctum concilium, 4 decembris 1988: in AAS 81(1989), p.907: in EV 11(1988-1989), Edizioni Dehoniane Bologna, 2002, n.1581.</p>
</div>
<div data-bbox=)

III. 결론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에페소서 3,10).”

「교회 헌장」 1항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다.”라고 공포하였다. “교회가 “구원의 보편 성사”⁴³⁾라는 사실은, 한 분이신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다다르시는 방식이 성사적 ‘경륜’으로 어떻게 궁극적으로 결정되는지 보여준다. 교회는 일곱 성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를 표현한다.”⁴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이 제정하시고 위탁하신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앙교리성의 「세례성사 양식문 변경에 관한 교리 공지」에서는 다음의 교의(*dogma*)를 명시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사들의 거행 양식과 무엇보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고 교회의 예식 행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짓을 명확히 알아보게 하는 요소들을, 교회가 수 세기에 걸쳐 그토록 소중히 지켜 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다른 그 누구도 비록 사제일지라도 결코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한다(참조: 교회법 제846조 제1항). 성사의 거행 양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실정 규범을 위반한 단순한 전례 남용이 아니라, 교회의 친교와 그리스도 활동의 인식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더욱 중대한 경우에는 성사 자체를 무효로 만든다. 전례 받은 것을 충실히 전수하는 것이 직무 행위가 가진 본성이기 때문이다(참조: 1코린 15,3).”⁴⁵⁾

43) 「교회 헌장」 48항: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높이 들려지시어 모든 사람을 당신께 이끌어 들이셨고(참조: 요한 12,32),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참조: 로마 6,9) 생명을 주시는 당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당신 몸인 교회를 구원의 보편 성사로 세우셨다.

44) 참조: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2007.2.2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16항.

교회가 선포하는 교의(*dogma*)로 교회법은 규정된다. 우리는 이 교회법을 통해서 과거의 교회와 대화를 할 수 있다. 물론 교회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의 정신은 과거에서부터 교회가 결정한 교의(*dogma*)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오늘날의 교회법의 규정에 반대하여 교회와의 친교로부터 멀어짐은(참조: 교회법 제96조) 과거에서부터 결정된 공동체의 교의(*dogma*)와도 멀어진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

45) “(1) 거룩한 전례를 규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권위에만, 곧 사도좌와 법 규범에 따라 주교에게 매여 있다. (2) 법으로 허용된 권한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례에 관한 규정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할 지역 주교회의에도 달려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그 누구도 비록 사제일지라도 결코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한다(「전례 헌장」 22항)”; “전례 거행에서는 누구나 교역자든 신자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딸린 모든 부분을 또 그것만을 하여야 한다(「전례 헌장」 28항)”: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0/08/06/0406/00923.html>(2023.2.5.

검색): 교황청 신앙교리성, 「세례성사 양식문 변경에 관한 교리 공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3(202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17쪽.

[참고 문헌]

1. 성경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2. 공의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²2002.
_____,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²2002.

3. 교회법전

한국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⁹2019.

4. 교황 문헌

Eugenius PP. IV (in Conc. Florentin), const. 『*Exultate Deo*』, 1439.11.22.

Pius PP. X, Litt. Ency. 『*Pascendi Dominici Gregis*』, 1907.09.08., in *ASS* 40(1907), 593~650.

Ioannes Paulus PP. II, Constitutio Apostolica 『*Sacrae disciplinae leges*』, 1983.01.25, in *AAS* 75/II(1983), VII-XIV.

_____, Litterae apostolicae 『*Vicesimus quintus annus*』 quinto iam lustro expleto conciliari ab promulgata de sacra liturgia constitutione Sacrosanctum concilium, 4 decembris 1988: in *AAS* 81(1989), 897~918: in *EV* 11(1988~1989), Edizioni Dehoniane Bologna, 2002, 976~1013.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2007.2.2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5. 교황청 문헌

Congregatio de Doctrina Fidei, 『*Donum veritatis*』, 1990.05.24, in *AAS* 82(1990), 1550~1570.

교황청 신앙교리성, 『루돌프 슈타이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공지』, 1991.3.9, in *AAS* 83(1991), 422.

- _____, 『‘새 교회’ 종교 단체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공지』, 1992.11.20, in *AAS* 85(1993), 179
- _____,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의문에 대한 답변』, 2001.6.5, in *AAS* 93(2001), 476.
- _____, 『세례의 유효성에 관해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 2008.2.1, in *AAS* 100(2008), 200.
- _____,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새로운 답변』, 2008.2.6, 177/85-26842.
- _____,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양식문에 따라 수여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하여 제기된 물음에 대한 답서』, 2020.6.24, in *Bollettino Sala Stampa*(B0406).
- _____, 『세례성사 양식문 변경에 관한 교리 공지』, 2020.8.6, in *Bollettino Sala Stampa*(B0406).

6. 단행본

- Heinrich Denzinger(ed, bilingue, a cura di Peter Hünermann), *Enchiridion Symbolorum-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EDB, Bologna, 1995.
- Lubac, Henri de., *Quellen Kirchlicher Einheit*, Einsiedeln(Johannes-Verlag), 1974.
- 발터 카스퍼, 『신학과 교회』,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2.
- 벨라시오 데 파울리스·안드레아 다우리아, 『일반 규범』, 김효석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 주세페 알베리고 외 엮음,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 트렌토 공의회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김영국·손희송·이경상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6.
- 하인리히 텐칭거,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헬무트 호핑 공편, 페터 휘너만 편집, 2014(제44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제1판).

7. 간행물

- Card. Ratzinger speaks to Press on New Instruction. “*Theology is not private idea of theologian*”, in *L'Osservatore Romano*, N.27, 1990.7.2, p.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라칭거 추기경이 새 훈령에 대해 보도 기관에 발
언한 내용 — 신학은 신학자의 사적 견해가 아니다」, 『한국천주교주
교회의 회보』 62호(1990/11), 53~56쪽.

8. 인터넷 자료

https://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vatican-council/documents/vat-i_const_18700424_dei-filius_it.html(2023.1.30. 검색).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IdNum=321&keyword=%EA%B5%90%EC%9D%98&gubun=01(2023.1.30. 검색).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0/08/06/0406/00923.html>(2023.2.1. 검색).

https://www.aod.org/august-23-2020-letter-to-the-faithful-english?fbclid=IwAR0LBCJSfAN-DNR7n37UZyvQh_vmfQHgm9BuMNIIMT64IgQr5viFbXgG4q28(2023.2.1. 검색).

<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6?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

<https://www.cbck.or.kr/Documents/Curia/401617?gb=title&search=%EC%9C%A0%ED%9A%A8%EC%84%B1>(2023.2.1. 검색).

<https://www.catholicnewsagency.com/news/45574/detroit-man-thought-he-was-a-priest-he-wasnt-even-a-baptized-catholic>(2023.2.1. 검색).

<https://cbck.or.kr/Documents/Curia/20210303?gb=title&search=답서>(2023.2.1. 검색).

http://www.vatican.va/holy_father/benedict_xvi/letters/2007/documents/hf_ben-xvi_let_20070707_lettera-vescovi_it.html(2023.3.15. 검색).

국문초록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교회 헌장」 8항)에 당신께서 세우신 ‘신약의 성사들’을 맡기셨다. 그리고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의 구성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믿을 교의(*dogma*)로 지켜왔다. “이 모든 성사들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료를 구성하는 사물들, 형상인 말씀들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것을 하려는 지향으로 성사를 수여하는 교역자이다. 만약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성사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DH 1312).” 본 연구의 시작이 되는 미국 디트로이트대교구에서의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제기는 유효한 성사의 구성 요소에 대해 교회가 다시금 강조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게 한다. 특별히 교회법은 교회가 선포하는 교의(*dogma*)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이 교회법을 통해서 과거의 교회와 대화를 할 수 있다. 물론 교회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의 정신은 과거에서부터 교회가 결정한 교의(*dogma*)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오늘날의 교회법의 규정에 반대하여 교회와의 친교로부터 멀어짐은(교회법 제96조) 과거에서부터 결정된 공동체의 교의(*dogma*)와도 멀어진다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 주제어: 교의, 성사, 세례, 기도 법칙, 믿음 법칙